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승낙서

□ 목적

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,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

☞ 집합건물인 경우에는『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름

☞ 관리자란 해당 건물, 토지나 물건 등의 사용 · 관리 등의 권한을 법령, 정관 및 규약 등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

□ 광고주(업주)

성 명		상 호	
광고물 종류		광고물 규격	
설 치 장 소	부산광역시 북구		

□ 승낙자 (토지나 물건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)

성 명	(인)	연 락 처	
주 소			

○ 옥외광고물 허가(신고)를 득한 후 표시·설치하셔야 합니다.

○ 옥외광고물은 공중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○ 관계법령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,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, 광고물 등의 표시·설치를 승낙한 토지·건물 등의 소유자(또는 관리자) 등에게 철거명령,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북 구 청 장 귀하